

# 검 토 보 고

1997. 3.17  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 출 : 1997년 2월 21일

○ 회 부 : 1997년 2월 22일

3. 제안이유

-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('96.12.31) 에 따라  
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 마련
- 연가일수는 근속기간 기준에서 재직기간 기준으로 정함
- 지참, 조퇴,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
-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
- 국가적인 행사참가 공가허가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허가

5. 검토보고

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,  
본 개정조례(안)은

-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'96.12.31일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관련내용을  
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